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08. 4. 14.

제 안 자 : 행정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현행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위촉 대상자중 구의원을 삭제하도록 수정하여 구청장의 판단에 의해 위촉할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위촉 대상자중 구의원을 삭제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지역경제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민간경제단체 임직원, 금융인 및 중소기업자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p>⑤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⑥ (생략)</p>	<p>⑤</p> <p>-----</p> <p>-----</p> <p>-----</p> <p>-----, 다만, 용자신청자의 신청금액이 당월 지원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용자신청자 및 신청금액에 대해 대출보증기관의 사전심사를 거친 경우와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p> <p>⑥ (현행과 같음)</p>	<p>⑤ (개정안과 같음)</p> <p>⑥ (개정안과 같음)</p>